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38호 2018. 01. 04.(목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6호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[연장] 공고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10호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-----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38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8-6호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2.3.5>

소하천공사 시행 허가(연장) 공고

공고 제2018- 6호

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, 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(소하천의 점용·사용)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일

사 천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 자)	상호 및 명칭	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		
	대표자 (성 명)	주소	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** (초량동)	
소하천명		초량소하천		
공사(점용· 사용) 개요	위치	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~봉계리 일원		
	면적	14,196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-
	기간	당초 : 2015.12 ~ 2017.12.31 변경 : 2015.12 ~ 2018.12.31		
	목적 및 사유	「하동~완사2 국도건설공사」와 관련한 초량소하천 정비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사 천 시 공 보

제538호(3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8-1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(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)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5 및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37조(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)에 따라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와 제22조(의견청취)에 따라 사전통지서(청문서)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감,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7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1. 공고 제목: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18. 1. 4.~2018. 1. 19. (15일간)
3. 당사자:

순번	상 호	성 명	사업장 소재지
1	(주)다산메탈	김*식	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탐리 산 155-5번지
2	(주)재평기공	홍*철	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1291번지
3	미래아이(주)	윤*재	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897-8번지

사 천 시 공 보

제538호(4)

4. 처분의 원인된 사실

- 1)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함.
- 2)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
- 3)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아니한 경우
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

6. 법적근거: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 제1호 및 제4호, 제51조의2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

7. 청문사항

- 청문일시: 2018. 1. 29.(월) 15:00~16:00
- 청문장소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8층 소회의실
- 주재자: 우주항공국 산단관리과 산단지원팀 박용국
- 청문대상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)
- 의견진술방법: 서면 또는 구술(신분증 지참)
- 문의처: 사천시청 산업단지과 (☎055-831-3456)

사 천 시 공 보

제538호(5)

8. 유의사항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(의견제출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 제35조(청문의 종결)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538호(6)

<붙임>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	(전화번호:)
	의견		
기타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